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3-1-34	
			제정일	2015. 09. 01.	
			개정일	2021. 02. 25.	
			페이지	1/2	관리 부서 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 운영하는 대학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학발전계획”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세부 실행 계획, 예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대학발전계획은 기획처에서 주관하여 수립하되, 필요시 내·외부 자문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②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외부 환경분석 및 학생, 교수와 직원, 이사회, 외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안은 대학의 적절한 의사결정 단위를 거쳐 구성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④ 대학 본부 및 부속·부설기관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수립한 대학발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대학은 대학발전 및 특성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 본부 및 부속·부설기관은 대학발전 및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① 대학은 대학발전 및 특성화 운영 평가를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 발전 및 특성화는 대학의 성과관리센터에서 주관하여 평가하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평가 결과는 차기 대학 발전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시 환류하여 반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3-1-34		
		제정일	2015. 09. 01.		
		개정일	2021. 02. 25.		
		페이지	2/2	관리 부서	기획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